

유한회사 엔싱저코리아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

I. 적용 범위 및 제3자 계약조건은 거부

1.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은 당사와 대한민국 고객과의 모든 거래관계에 적용된다.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은 고객이 회사이거나, 공법에 다른 법인 또는 공법에 따른 특별회사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당사는 개별 사안이 구매계약에 따른 것인지, 용역계약 (또는 용역 및 자재계약)에 따른 것인지, 또는 기타 거래관계에 따른 것인지에 상관없이,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서는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계약일반조건은 장래의 거래관계에도 적용된다.

2. 당사는 당사가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고객의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것에 동의한다.

II. 정보, 기술문서, 금형 및 공구

1. 당사는 고객에게 당사 제품에 관한 도해 또는 기술 도안과 같은 기술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이를 당사가 의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하며, 정부 기관 및 법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2. 이와 같은 문서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당사가 보유한다. 당사가 요청할 경우, 고객은 이를 당사에 즉시 및 비용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3.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금형 및 기타 공구들은 고객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의 소유로 한다.

III. 자재의 공급

1. 고객이 자재를 공급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이와 같은 자재는 고객의 비용과 위험으로 즉시 공급되어야 하며, 가장 높은 품질로, 합리적인 수량감소를 고려하여 최소 5%의 추가분을 더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 고객이 불충분한 양의 자재 또는 불량 자재를 제공하였거나 자재를 늦게 제공하였을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제조방해와 관련하여 조래된 비용을 포함한 관련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IV. 주문 확인

1. 계약은 당사가 구두 협의(전화 또는 회의 포함)가 완료된 때로부터 가능한 빨리 해당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의 서면에 의한 주문 확인을 구속하는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다.

2. 위 IV조 (1)항은 당사 고객 동의에 의존하기 어려웠던 경우이거나 고객이 당사의 확인을 즉시 거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V. 가격 및 가격의 인상

1. 당사가 청구할 요율 또는 금액이 합의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급일 당시에 유효한 요율 또는 금액이 적용된다.

2. 부가세는 당사가 제시한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청구되며, 포장비용, 운송비용 또는 선적비용 및 기타 추가비용 역시 별도로 계산된다(인코텀즈 2010 공장인도 조건(ex-works, 서울)).

3. 후속 주문의 경우, 기존 주문에 적용하기로 협의된 가격에 구속 받지 않는다.

4. 합의된 특정 기간 내 또는 특정일,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른 일부 공급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당사의 동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액이 일반적일 이상된 만큼 기 협의된 금액을 인상시킬 수 있다.

5. 당사가 주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객의 주문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당사가 이와 같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당사가 주문일로부터 그 실행일 사이의 기간 동안 일반적일 가격을 인상시켜왔다면, 당사는 고객간 기 협의된 금액을 그 동일 금액으로 인상시킬 수 있다.

VI. 지급, 상계 및 유예권

1. 당사의 일반 지불조건은 각 해당물의 말일로부터 30일 후며, 이는 개별적 경우(예컨대, 대형 거래처의 경우)에 따라 당사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의 서면 동의로써 60일로 연장될 수 있다. 첫 주문의 경우, 전액(또는 높은 금액의 경우, 총 구매가격의 30%)을 현금으로 선납할 것이 요구된다. 후속 주문 건에 대해서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해당물의 말일로부터 30일을 기간으로 하는 신용거래를 제안할 수 있다.

2. 전액이 모두 수령된 경우에만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고객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금액 또는 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에 따라 당사가 받을 미수금과 상계하거나 당사가 받을 금액에 대해 유예권을 행사할 수 있다.

VII. 이행시기, 채무 불이행, 이행장소 및 일부 이행

1. 공급기간은 주문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 및 거래의 모든 조건에 대해 당사 고객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산된다. 공급기간은 고객이 제공하여야 할 자재, 부품 및 고객이 제공하여야 할 서류가 수령되기 전이나, 고객이 받아야 할 허가 및 기술정보를 득하기 전에는 개시되지 않는다. 합의된 공급기간은 이와 같은 전체 조건의 달성이 지연되는 만큼의 기간 동안 연기된다.

2. 당사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이와 같은 지체가 당사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예측가능하지 않거나 예방할 수 없는 경우로써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어도 극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는다.

3. 당사가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유한회사 엔싱저코리아의 등록된 주소지로 한다.

4. 당사는 일부 이행을 할 권리를 가진다.

VIII. 위험의 이전, 운송 및 인수

1. 위험은 대한민국 내 당사의 창고에서 당사 제품이 출하되기 전까지 고객에게 이전된다. 이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국내 운송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사는 수송 과정에서의 제품 손상에 대해 보증을 부보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2. 당사는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위험은 제품의 운송을 위한 준비가 마쳐지기 전까지 고객에게 이전된다.

3. 공급된 제품은 그것에 하자가 보이는 경우에도, 고객이 수령한 제품을 제IX조 (1)항에 따라 접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자면, 공급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고객은 이를 먼저 인수 한 후, 이에 대해 당사에게 제IX조 (1)항에 따른 통지를 할 후 제IX조 (2)항에 따른 해결을 구하여야 한다.

IX.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및 보충

1. 고객은 제품을 수령하고 나면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한 후, 어떠한 하자(수송 과정에서의 훼손 또는 손실을 포함한다)가 발견되거나 수량의 부족이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해 당사에 즉시 서면통지를 하고, 달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을 당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두어야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이와 같은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구매금액의 환인을 요구하거나, 및/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바로 발견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해 제품이 공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에 대해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에 당사의 이행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이와 같은 하자가 있는 이행을 당사 재량에 따라 (i) 해당 하자를 수리하거나, (ii) 공급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하자 없는 대체품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당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교체된 모든 부품은 당사의 소유로 한다. 후속행위에는 하자 있는 제품의 분해, 또는 당사가 제품을 설치할 의무가 원래 없던 경우 대체품의 제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당사는 고객이 제공한 자재, 고객이 정한 사양에 따라 조달한 자재, 또는 고객이 정한 사양에 따라 행한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지출/납비용에 따른 배상청구, 하자가 있던 경우에도 제IX조에 따라서는 적용되며, 다른 모든 경우에는 배제된다.

X. 손해배상 및 책임의 제한

1. 관련 계약 또는 아래의 조항을 포함한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당사는 당사 계약상의 의무 또는 계약에 따르지 않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단, 당사의 책임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견 가능한 총 손해의 배상에 한정된다.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의 경우, 당사는 오로지 당사의 귀책으로 인한 한도 내에서만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3. 위 제IX조 (2)항에 규정된 책임의 제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책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자에 의한 또는 그 자의 이익을 위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위 책임의 제한은 당사가 어떠한 결함을 부정하게 은폐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제품의 품질 또는 고객의 클레임에 대한 보장을 약속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위 제IX조 (1)항을 조건으로 하여, 중대한 결함 및 결함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공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수락절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이와 같은 수락으로써 개시된다.

5. 제IX조 (4)항에 따른 기간은 특정 사안에 따라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더 짧은 기간일 경우가 아닌 한,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품의 하자에 대한 고객의 계약상 손해는 계약 외의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XI. 해지 및 양도

1. 만약 당사가 요청된 일자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결함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의무 이행 또는 후속절차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간은 당사가 이미 개시한 의무의 이행을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2주보다는 긴 기간이어야 한다. 단, 당사가 적절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후속절차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의무이행 또는 후속절차의 이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사는 고객의 재정 상태가 근본적으로 악화되었거나 도산절차가 신청 또는 개시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고객은 관련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당사의 동의 없이 보편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보편자가 고객이 청구하는 손해를 부담할 경우에만 그러하다.

XII. 담보

1. 당사는 제품에 대한 금액 및 고객과의 상거래 관계상 발생하는 다른 모든 미수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당사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2. 고객에 의한 (당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유보된' 제품의 가공 및 완성에는 당사에 아무런 비용 및 의무 없이 완성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완성된 새 제품은 당사의 소유가 된다. 제품이 당사의 것이 아닌 다른 제품과 함께 가공되는 경우, 당사는 유보된 제품과 다른 제품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새 제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고객은 당사가 이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제품과의 혼합, 혼화 또는 병합의 경우,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객이 이와 같은 혼합, 혼화 또는 병합으로 인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고객은 즉시 혼합, 혼화 또는 병합 당시 유보된 제품과 다른 제품의 가치가 차지한다면 비율대로 새 제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당사에 대해 이전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고객은 당사가 소유권 또는 공동 소유권을 가지는 제품을 비용청구 없이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3. 고객은 유보된 제품의 재판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미수금을 유보된 제품의 가치에 따라 다른 모든 부수적인 권리들과 함께 즉시 당사에 대해 양도하여야 한다. 이는 유보된 제품이 제3자

소유의 현상에 중요한 부분으로 설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유보된 제품이 당사의 공동 소유 하에 있는 경우, 미수금은 해당 제품의 총 가치 중 당사의 지분이 해당되는 만큼 당사에 대해 양도되어야 한다. 사전 양도는 현재 거래처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양금을 포함한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당사를 대신하여 미수금을 접수할 권한을 가진다.

4. 고객이 관련 계약 및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그리고 제XII조 (3)항에 따라 모든 미수금이 유효하게 당사에 이전된 경우, 고객은 자신의 통상의 영업수행과정으로써 유보된 제품을 재판매 할 수 있다. 고객은 이와 같은 재판매 계약에 따른 전 금액을 제3자로부터 모두 수령하지 않은 한, (자신과 제3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유보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에 동의하지는 안 된다. 절권설정, 담보로 제공 및 양도 등 제품에 대한 일반적이지 않은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보된 제품 또는 양도된 미수금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은 그 즉시 당사에 통지되어야 한다.

5. 고객이 제VI조 (1)항에 따른 납기 경과 이후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제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히 고객이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 당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즉시 납기에 도달하며, 모든 지급 지연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는 유보된 제품에 대한 소유를 취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이를 회수할 권리를 철회시킬 수 있다. 고객은 제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제품을 대한 모든 보수 이행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당사에 의한 유보된 제품의 회수 및 절권설정은 관련 계약의 예외로 간주되지 않는다. 유보된 제품의 회수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당사는 유보된 제품을 (개인간의) 합의대가로 판매할 권한을 가진다.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은 즉시 제XII조 (3)항에 따라 당사에 대해 양도된 미수금에 대한 리스트 및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추가 정보 및 서류를 보내주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이와 같은 양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6. 당사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고객에 대한 담보물을, 해당 담보물의 가치가 당사가 거래 관계에 따라 가지는 총 청구액을 15%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내용을 것을 약속한다.

XIII. 재산상

당사가 고객이 제공한 도안, 모델, 패턴, 또는 부품을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하여 다른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을 것을 책임질 의무를 가진다. 고객은 제3자 재산권의 실제 침해 또는 이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당사를 면책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의 모든 손해 및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양 당사 및/또는 고객이 제3자의 재산권으로 인하여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양자는 해당 사안의 법적 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해당 작업을 즉시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XIV. 준수

1. 당사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두고 있다. 당사는 당사의 행동 강령에 덧붙여 고객의 준수에 관한 규칙을 소개하여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고객이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모든 현존하는 계약을 특별히 해지할 권한을 가진다.

XV. 분리가능성, 준거법, 관할 및 계약 언어

1.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 및 그와 관련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이와 같은 무효는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 및/또는 관련 계약의 다른 조항들의 유효성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은 무효로 된 조항을 원래 의도된 계약상 및 재정적 결과가 가장 근접하게 도달 가능한 다른 규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계약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이 적용된다.

3.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계약에 따른 계약관계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고객의 등록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 역시 고객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 관할을 가진다.

4.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계약은 영어로 체결된다. 영문본과 그 번역본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명확히 하자면,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에 대한 국문 번역본은 참고 목적만을 위하여 제공된다.

**** 귀하가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을 읽었고 이를 이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인으로 다음 서명페이지를 적용한 권한 있는 자로 하여금 작성 및 서명하게 하여, 이를 유한회사 엔싱저코리아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본 공급에 관한 계약일반조건을 전부 읽었고, 이해하였으므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